

# 기업부설연구소 정관

2020.06.12

## 1. 기업부설연구소 정관

### 제1장 총칙

#### 제1조 (명칭)

- ① 본 연구소의 명칭은 주식회사 솔담엔지니어링 기업부설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- ② 연구소의 영문 명칭은 ‘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(약칭 R&D Institute)’로 표기한다.

#### 제2조 (소재지)

- ① 연구소의 주 사무소는 대한민국 내에 둔다.

#### 제3조 (목적)

본 연구소는 『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』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4조의2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솔담엔지니어링(이하 “기업”이라 한다)의 연구개발 전담조직으로서 연구 및 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

- ① 기업 내부에서 우수하고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며,
- ② 환경·도시·방재관련 분야의 학술연구 및 기술개발 활동을 통하여 기업의 연구 및 개발 촉진에 기여하고,
- ③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서 사회에 이바지하는데 있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4조 (사업)

본 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
- ① 환경·도시·방재관련 지식경영, 지식관리 등 지식일반에 관한 이론적 연구·개발
- ② 환경·도시·방재관련 산업부문에 관한 기술정보의 수집·분석 및 전략 연구·개발
- ③ 정부, 민간, 법인, 단체 등과 환경·도시·방재관련 연구·개발 협력 및 기술용역 수탁·위탁
- ④ 환경·도시·방재관련 産(산)·學(학)·研(연)과 협력·지원과 기술사업화
- ⑤ 주요임무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
- ⑥ 위 각호의 부대사업 및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## 제2장 조직

제5조 (임원의 선임) 연구소의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

제6조 (소장) 소장은 임원으로서 연구소를 대표하며,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연구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7조 (연구원)

① 연구소의 연구원은 소장이 임명한다.

제8조 (임원 및 연구원의 직무수행상 의무)

① 연구소의 임원 및 연구원은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하고, 신의를 좇아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연구소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 부칙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